

# I. M. O 제35차 복원성, 만재출수선 및 어선안전 소위원회 회의참석 보고

한국어선협회 기술개발부  
기술원 나 형 진

## 1. 회의일반사항

- 회의명 : 제35차 복원성, 만재출수선 및 어선안전 소위원회
- 기 간 : 1991. 2. 4(월) ~ 1991. 2. 8(금)
- 장 소 : 국제해사기구(IMO) 본부 (영국런던)
- 참가현황
  - 회원국 : 39개국, 127명
  - 준회원국 : 1개국, 3명
  - UN 대표기구 : 1개기구, 1명
  - 정부간 기구 : 1개기구, 1명
  - 비정부간 기구 : 4개 기구, 11명
  - 사무국 : 7명

## 2. 작업반별 주요업무 및 회의의제

- 1) 작업반별 주요업무
- ① 비손상 복원성 특별 작업반
    - 모든 선박에 대한 비손상 복원성 코드를 종합
    - OPEN - TOP 컨테이너선의 건현, 톤수측정 및 감항성 보장을 위한 모형선 시험의 조건 결정
  - ② 구획 및 손상복원성 특별 작업반
    - 1992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발표되는 "길이 100m 이상의 ro-ro ship을 포함한 건화물선의 구획 및 손상복원성

규칙"의 주해서 작성

- SOLAS '90 Standard를 현존 ro-ro ferry에 적용하는 문제
- ③ 토레모리노스 협약 의정서 개발 특별 작업반
  - 토레모리노스 협약의 조속 발효를 위한 규칙의 개정문제

## 3. 회의일정 및 의제

일시	회 의 의 제
월 (2.4)	개 회 ○ 회의 의제 채택 ○ I. M. O 타기구 결정사항 ○ 어구에 의한 외력과 관련된 조업 형태 ○ 구획 및 손상복원성 (* 제1작업반) ○ 비손상 복원성 (* 제2작업반)
화 (2.5)	○ 1997 토레모리노스 협약 의정서 개발 (* 제3작업반) ○ 1966 LL 협약 기술규칙의 개발 ○ OPEN TOP 컨테이너선 ○ 손상카드의 수집 및 분석
수 (2.6)	○ 동적 지시선을 위한 안전코드의 복원성 요건에 관한 개정 (resolution A. 373 (X)) ○ MODU의 비손상 복원성 및 손상복원성 대체방안의 개정 ○ 대형선의 선체균열 ○ 동물 운반선

일시	회 의 의 제
수 (2.6)	○. TOP SIDE TANK의 역지변 장치 ○. 해난에 있어서 인적요소의 역할 ○. 해양오염사고 방지 및 경감에 있어서 IMO규칙의 적합여부 검
목 (2.7)	○. 기타사항 ○. 1992년도 의장 및 부의장 선출 ○. 작업계획
금 (2.8)	○. 해사안전위원회에의 보고

#### 4. 어선관련분야 주요 토의내용 및 결과

##### 1) 어구에 의한 외력(의제6)

- 지난 제34회기시 소련, 중국, 폴란드가 제출한 문서(SLF 34/4, SLF 34/4/corr. 1, SLF 33/INF.17, SLF 33/INF. 26)를 비손상 복원성 특별작업반에서 검토하고 draft intact stability code (SLF 35/3/1, ANNEX. 1)의 4.2.2.5에 다음과 같은 guidance 를 설정하기로 함.  
"전복에 대한 일반적인 예방으로 특히 power block으로 어구를 끌어올릴 때나 trawl시 해저 장애물이 걸려있을 경우와 같이 어구에 의해 복원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주의를 하여야 한다."

##### 2) 1977 토레모리노스 협약 의정서 개발(의제9)

- ① 의정서의 조문초안(SLF 35/9/5, ANNEX. 2)
  - 특별작업반 중간회의에서 작성된 의정서 조문초안을 검토하고 조문 10(1)의 [ ]안의 수치를 15,000에서 14,000으로 수정하고 footnote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함.  
"수치는 24m이상의 세계어선 선복량의 약 50%에서 일치하도록 하고 최종 수치는 회의에서 결정한다.  
또, 행정 또는 법률 전문가가 참석치 않은 관계로 세부검토는 차기회의에서 검토기로 함.

##### ② 검사와 증서의 요구사항(규칙 6-11)

- 토레모리노스 협약에 HSSC(검사와 증서의 조화제도)를 도입치 않기로 하였음을 알리고 현존선에 검사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용할 필요가 없음을 강조하였으며 증서의 양식은 HSSC에 따르도록 동의하고 사무국에 초안을 작성토록 요청함.

##### ③ 선수높이

- 아국대표가 지적한 1977 토레모리노스 협약 recommendation 5, attachment 3의 선수높이 요구가 너무 크다는 의견에 대해 검토하고 1966 LL, 규칙 39 및 Poland 제안을 intact stability working group에 검토하도록 요청함.

##### ④ 구명설비에 대한 제7장의 개정제안(SLF 35/9/4)

- 국제구명설비 제작자협회(ILAMA)에서 제출한 문서를 검토하고 LSR 소위원회의 검토후 재검토기로 함.

##### ⑤ 어업실습선

- 아국대표가 어업실습선의 1977 SFV 적용여부에 관해 발언한 내용에 대해 검토하고 의정서 조문 3.2.3.항에 따라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.

##### ⑥ 1977 SFV 협약 권고사항에 관한 개정

- attachment 3에 있는 권고사항을 검토하고 각 소위원회 및 특별작업반의 작업결과에 따라 수정하기로 함.

##### ⑦ 회의의 배정

- 1992년 ~ 1993년 2년간 중간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MSC에 승인을 요청함.

#### 5. 차기(제36차 SLF)회의 특별 작업반 업무

##### 1) 차기회의 의장 및 부의장

- 의 장 : Mr. H. Hormann (Germany)
- 부의장 : prof. L. Kobylinski (Poland)

##### 2) 특별작업반 업무

- 각 정부가 제출한 지적을 토대로 조문

초안에 관한 검토

- 개정규칙의 문서에 대한 필요한 조정과 ANNEX의 수정초안 검토
- 규칙 25, 40 및 제8장을 포함한 1977 SFV 협약의 규칙수정을 위한 각 제안의 검토
- 회의 결의 초안의 준비
- 주석 및 권고에 관한 검토
- 회의배치 및 일정

6. 아국대표단 활동사항

아국대표단은 6명으로 구성되어 제35차 SLF 소위원회에 참석하였고 다시 특별작업반 (비손상 복원성, 구획, 손상 복원성 및 1977 SFV 협약 의정서 개발)에 나누어서 참석하여 아국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특히 1977 SFV 협약 의정서 개발을 위한 특별작업반에 참석, 선수높이, 어업실습선 등 아국이 발언한 내용을 설명, 검토하도록 하였음.

## 수산물은 맛도 일등, 영양도 일등!!

수산물은 계절, 기호, 장소에 따라서 언제든지  
선택해 먹을 수 있어 식탁의  
미각을 북돋아 줍니다.